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전문심리위원회에 지급할 수당 등(안 제65조의3 신설)

가. 개정이유

- 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서 위임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여비, 일당 및 숙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다. 입법효과

- 전문심리위원회에 지급할 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심리위원 수당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여 당사자의 금전적 부담 방지

2.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안 제65조의4 신설)

가. 개정이유

- 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서 위임한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 특허심판원장은 매 2년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정해진 사람과 추천 기관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
-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의 보완을 위해 언제든지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음

다. 입법효과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후보자로 관리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

3.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안 제65조의5 신설)

가. 개정이유

- 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서 위임한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 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음
-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결정한 경우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

다. 입법효과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이 분명하게 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심판절차의 원활할 진행 가능

4. 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안 제65조 개정, 안 제61조 개정,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가. 개정이유

-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가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견제출 및 제척·기피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의견제출 시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를 동일하게 사용
- 제척·기피신청 시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별지 제33호서식 신청서를 동일하게 사용

다. 입법효과

- 양식을 통일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당사자의 편의 향상